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54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2021.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1. 8. 23. 접수 제118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9.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약정은 몇 차례 대출금액 감액 및 만기가 연장되어 2022. 4. 27. 기준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15,763,570원이다.

나. C는 2021. 8.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1. 8.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1. 8. 23. 접수 제11830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21. 8. 12.)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순번	재산내역	평가액(원)
적극재산	1	이 사건 각 부동산	20,000,000
	2	광주 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레지던스'라고 한다)	270,000,000
	3	광주 북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1,500,000
	4	전남 보성군 H 합유지분	0
		합계	491,500,000
소극재산	1	I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205,000,000
	2	J조합	146,000,000
	3	K조합	45,000,000
	4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15,000,000
		합계	411,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합계 491,5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411,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M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하더라도 80,500,000원의 적극재산이 남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1. 8. 13. 이 사건 레지던스를 N에게 매도하고, 2021. 8. 31. 이 사건 아파트를 O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C의 위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피고를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C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달리 위 각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레지던스 및 아파트 매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산입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보성군 답 1881㎡

2. 전라남도 보성군 전 274㎡

3. 전라남도 보성군 전 1084㎡

(위 1, 2, 3 소유자)

4. 전라남도 보성군 전 1517㎡

(위 4 공유자 지분 5분의 1 전부) 끝.

